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9. 4. 6
개정 2011. 3. 28
개정 2012. 3. 12
개정 2015. 5. 18
개정 2015. 11. 25
개정 2019. 6. 17
개정 2019. 12. 23
개정 2020. 6. 29
개정 2020. 12. 21
개정 2021. 11. 15
개정 2022. 11. 30

연구윤리강령(신설 2015. 11. 25)

우리 통일연구원 연구진들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연구활동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높은 학자적 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에 적극 참여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임직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 5. 18)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5. 18, 2020.6.29)

1. 연구부정행위란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5. 18)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5. 18)

나.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개정 2011. 3. 28, 2015. 5. 18, 2021. 11. 15.)

라.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5. 18, 2021. 11. 15.)

마. (삭제 2015. 5. 18)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사.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 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2. (삭제 2021. 11. 15.)
 3. “연구자”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 자(위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포함)를 말한다. (신설 2020. 6. 29., 개정 2021. 11. 15.)
 4. “연구지원인력”이라 함은 제2호의 연구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신설 2021. 11. 15.)
 5. “연구활동”이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수행과정의 전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6.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게 알린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 11. 15.)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21. 11. 15.)
 8.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9.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10.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신설 2021. 11. 15.)
- 제 4 조 (사전예방 의무)** ① 원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8., 개정 2015. 5. 18. 2021. 11. 15.)
1.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
 4.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연구자는 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

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제 2 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 5 조 (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연구보고서 작성, 학술대회 참가, 학술지 게재 등 연구활동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6. 17, 2021. 11. 15.)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수행
2.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3. 새로운 연구나 성과를 발표하여 정부 정책 및 학술 발전에 기여
4.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5.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6. 공동 연구에서의 올바른 저자 표시 및 공정한 업적 배분
7. 연구활동에서의 재정적, 인적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8. 연구 자료나 데이터의 철저한 관리

② 연구자는 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 6 조 (공적진술의 진실성) 연구자는 광고, 각종 인쇄 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6.29)

제 7 조 (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제 8 조 (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개정 2015. 5. 18)

제 9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개정 2015. 5. 18)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윤리에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6.29, 2021. 11. 15.)

1.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제도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위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1.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12, 2015. 5 18)
2.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5. 18, 2019. 6. 17)
3. 위원회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관리 담당 부서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개정 2015. 5. 18)

제12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14조 (제보 및 접수) 제보자가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연구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1. 15.)

제 15 조 (표절행위 심사대상)

1. 표절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 보고서 등 1차 생산물로 한다.(신설 2011. 3. 28)
2. 표절 판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신설 2011. 3. 28, 2021.11. 15.)

제16조 (조사 및 심의) (조사 및 심의)(개정 2015. 5.18., 2019. 12. 23., 전문개정 2021.11. 15.)

1.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진상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 및 “통보”,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제5호에 따라 구성한다.
5. 제 4호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업무 담당부서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 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상 원장이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되면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9호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9. 원장은 본조사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나.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것
 - 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마. 그 밖에 피조사자 또는 조사대상 연구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
10. 원장은 제9호의 절차를 거친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 기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 조사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2. 제보에 직접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행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14. 조사위원회는 본조사가 종료되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위탁한 기관 등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나.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

우

16. 원장은 제7호와 제14호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제재 조치) 위원회는 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연구윤리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1. 3. 28, 2015. 5. 18)

1.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논문투고의 제한,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1. 3. 28)
2. 연구윤리 위반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신설 2019. 6. 17)
3. 수상이 취소될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은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4. 논문 무효처리 시 원고료를 회수한다.
5. 외부 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배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제18조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1. 15.)
2. 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재조사 실시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 15.)
3. 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며 본조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신설 2021.11. 15.)

제19조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①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연구원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2022. 11. 30.)

②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30.)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11. 30.)

제 5 장 저자 표기 (신설 2020.6.29)

제21조 (저자의 정의) 저자란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

제22조 (저자 표기 기준)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저자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여: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에 실질적 지적 기여를 한 자
2. 책임: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3. 협의: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제23조 (저자 표기 기준 적용 범위)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모든 연구보고서에 공

통적으로 적용한다. 수탁 과제외의 경우 발주처 양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저자 결정) 저자 표기는 연구진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저자 및 기여 확인서 <별지1> 및 <별지1-1>을 연구윤리 심의기구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저자 변경 또는 저자 표기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연구사업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0. 12. 21.)

제25조 (저자 표기 방법) 연구보고서의 저자 표기 방법은 <별지2>를 따른다.

1.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성명만 기재한다.
2. 저자는 연구보고서 내지(속표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저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내지(속표지) 또는 서문 등에 기재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제26조 (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9. 4. 6)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8)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2)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5. 11. 2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2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윤리 위반 연구자 제재조치 기준

고의성 / 중대성	강	중	약
고의·중과실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
경과실	경징계 의결 요구	주의 또는 경고	

[별지 1] 저자 및 기여 확인서

연구보고서 저자 및 기여 확인서

■ 연구과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 연구보고서 저자 현황

구 분	기여사항
저자A (소속, 직급)	
저자B (소속, 직급)	

■ 연구보고서 기타 기여자 현황

구 분	기여사항
기여자A (소속, 직급)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기타 연구와 관련된 기여사항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서명)

[별지 1-1] 저자 및 기여 확인서 (※ 위탁과제의 연구보고서 별도 출판 시)

연구보고서 저자 및 기여 확인서

■ 연구과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위탁과제 수행 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 연구보고서 저자 현황

구 분	기여사항
저자A (소속, 직급)	
저자B (소속, 직급)	

■ 연구보고서 기타 기여자 현황

구 분	기여사항
기여자A (소속, 직급)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기타 연구와 관련된 기여사항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과제 수행 책임자 ○ ○ ○ (서명)

[별지 2] 연구보고서 저자 표기 방법

-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저자 성명만 기재
- 저자는 연구보고서 내지(속표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구책임자: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대학교 교수)

- 저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는 내지(속표지) 또는 서문 등에 기재 가능

① 내지(속표지)에 표기

[예시]

연구책임자: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대학교 교수)
연구 지원: ○○○ (통일연구원 연구원)

② 서문 등에 문장으로 작성

[예시]

(...) 이 보고서의 제 I, II, V 장은 ○○○, 제 III, IV 장은 △△△이 집필하였고, □□□이 연구수행을 지원하였음을 밝혀둔다. (...)